

유명인사의 과거 비행에 관한 보도의 허용성¹⁾

1. 개요

유명한 기업인이 수십 년 전에 사법직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시도했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금지하는 민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를 보도한 잡지출판인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결정에서 과거 사건을 현재 보도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잊힐 권리”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동 재판소는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을 둘러싼 내용에 관한 보도가 진실이라면 감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본법상 잊힐 권리가 인정된다 하여, 시간이 경과하면 도식적으로 당사자가 꺼리는 내용을 언론기관이 기사에 실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 하였다. 기사 전반에 걸쳐 보도할 이익이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부정적인 인상을 줄 상황을 게재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2. 사실관계

경제잡지 출판인인 심판청구인은 2011년 한 인물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 보도된 인물은 자기 이름을 따서 회사를 설립하여 상장한 기업인이다. 그 기사는 그가 이사회 의장, 그의 처가 감사위원회 위원이라는 사실과 회사의 사업 및 경제적 성장, 그리고 최근 유동성의 악화와 여러 법적 분쟁에 관한 내용이다. 서두에, 그가 “두 가지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항공기조종과 법적 분쟁”이라고 소개하고, 그가 조종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법학 공부의 마감은 그리 좋지 못하는데, 부정행위를 시도하다가 사법직 국가시험에서 배제되었다고 하였다. 기사는 이어서, 그의 법적 난관은 계속되는데, 최근에는 의료보험 감정인 매수혐의로 1년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위증과 협박의 교사 미수 혐의로 상고심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하였다.

1) 2020년 6월 23일자 사건번호 1 BvR 1240/14

그 기업인이 함부르크 주법원에 제소하자 동 법원은 이 민사사건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시도에 관한 언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회관계에 관한 사실의 공표는 널리 감수하여야 하기는 하지만, 이로써 그가 부정한 방법에 물든 인물로 묘사되었다는 것이다. 심판청구인이 단지 졸업을 하지 못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기사내용만 금지한다면, 소송을 즐기며 법학교육을 마치지 못했다고는 여전히 보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보도가 본질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 하였다.

심판청구인이 이에 대해 주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상고불허결정이 덧붙여졌다. 이 불허결정에 대한 항고 역시 연방민형사법원에서 기각되자, 심판청구인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결정주문

(1) 함부르크 주 법원의 2012년 3월 23일자 판결과 주 고등법원의 2012년 10월 30일자 판결은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심판청구인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두 결정을 파기한다.

이로써 2014년 3월 25일자 연방민형사법원의 결정은 그 심판대상을 상실하였다.

(2), (3) 생략

4. 결정이유

(1)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에서 언론의 보도이익과 당사자의 인격 이익을 형량하기 위하여 오래 전의 사건을 다시 소환하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을 실시하였다.

사회관계에 관한 사실의 공표는 감수하여야 하지만, 사적 영역의 핵심에 속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적인 언급에서 배제되는 사실과 행동에 관해서는 다르다. 예컨대 사적 관계와 성생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그러하다.

또한 보도의 이익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절실함이 덜해진다는 사실도 고려하여야 한다. 보도된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만으로 보도에 대한 관심이 식는 것은 아니다. 그때그때의 계기로 새로운 보도를 할 때에 그 이익을 가늠하게 되는데, 그 계기는 새로 발생할 수도 있고, 사건에 현재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명인사의 청년기나 그 이전 시절을 특징짓는 비행이나 견해, 표현에 관해서 보도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대중 앞에 처음 나타나는 때에는 관련 사건으로부터 여러 해가 지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라는 변수가 보도의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문제에는 당사자의 행태가 중요하다. 대중 앞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노출시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인물이라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잊히려는 의지로써 생활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과거의 행태에 관해 더 이상 대중의 입에 오르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공표된 정보의 내용과 정보원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직접 접할 수 있는 정보라면, 조사에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한다거나 불법행위로써 취득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바로 보도해도 될 것이다. 공표된 정황이 사적영역에 속하는지, 강한 사회관계를 나타내는 행태에 관한 것인지도 중요하다. 독자의 범위나 판매부수,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지 등 비난기사의 확산효과로써 인격권의 침해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2) 심판대상인 결정은 이러한 헌법적 척도를 충족하지 못한다. 대중 앞에 선 인물에 관하여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은 진실한 정황이라면 언론이 보도할 수 있으며, 그 정당함이 시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도식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시간요소 외에 보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거가 인정사실에서도 해당법원의 형량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보도와 관련하여 사법직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시도하였다는 사실이 한 인격의 상을 결정짓고 사생활의 자기결정성을 위태롭게 할 만한 오점

은 아니다. 그 보도로 사회적 고립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사에 부정행위의 시도사실을 포함했다 하더라도, 그 보도에서 그를 터무니없이 사회적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입장 내지 집요함을 찾을 수는 없다.

그것보다 그 인물이 항상 대중 지향적으로 행동하고 대중성을 추구하였다는 점을 형량에 넣어야 한다. 자발적으로 대중 앞에 계속 나서는 인물이 자신의 지난 잘못을 미담이 아니라 하여 망각 속에 덮어둘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개별적 행동을 환기할 이익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절대적이고도 도식적으로 소멸되지는 않는다. 그때그때의 보도 및 그 안에 포함된 정보의 이익, 그리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당사자가 자유로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손해를 형량한 결과에 따라 잊힐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진실에 맞게 보도하고, 그 사실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일차적으로 언론기관이 결정할 문제이다. 형량에 중요한 보도의 공익을 개개의 기사 내용에 비추어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기사 전반에 걸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심판대상인 결정은 이를 간과한 것이다.

5. 결론

과오(過誤)가 세상의 관심을 받게 되면, 통상 이를 저지른 사람의 생활에 부담이 따르게 되므로 일정한 시일이 지나면 잊힐 것을 기대하게 된다. 반면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매개로 하는 알 권리 역시 사회적 의미가 있으므로, 양자는 충돌한다. 더구나 망각을 모르는 기억장치를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보도가 기록되는 경우 그 충돌은 더욱 첨예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갈등상황에 관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일련의 설시를 통해 언론출판의 자유가 허용되는 한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19년 11월 6일자 사건번호 1 BvR 16/13(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0년 제3호,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1호)의 결정에서는 수십 년 전의 범죄(살인)에 관한 보도의 인터넷 게재 허용성에 관해 다루었으며, 이번에는 범죄사실로 증명되지 않은 혐의에 관한 보도의 인터넷 게재(2020년 7월 7일자 사건번호 1BvR 146/17)와 과거의 비행 및 나쁜 인상을 줄 만한 성향의 보도(2020년

6월 23일자 사건번호 1 BvR 1240/14)에 관한 사건이다. 여기서는 후자의 사건, 즉 과거의 과오를 인터넷으로 장기간 소환할 가능성에 관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기준을 살펴보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보도의 이익은 시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무조건 소멸되지는 않으므로, 상황에 따라 당사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형량하여 잊힐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보도의 대상이 된 자가 특히 대중성을 추구하는 인물이라는 점에 비중을 두었다.